



税務
法人

三友 SNTA

■ (Yeouido-dong, Shinsong Bldg.)
No.902, 67 Yeouinaru-ro, Yeongdeungpo-gu,
Seoul, 150-923, Korea

■ TEL : +82-2-3215-1300
■ FAX : +82-2-761-6640

韓国と香港との租税条約制定の交渉が妥結(仮署名)のご案内

文書番号: SNTA201310-10

受 信: 各会員社 各位

送 信: 税務法人 三友 SNTA

貴社ますますご盛栄のこととお慶び申し上げます。

さて、表題に関しまして、2013年9月16日付で企画財政部より発表された内容につきまして、下記のとおりご案内いたします。ご参考までに、韓国内での正式な署名手続きと国会での批准には、最短でも6ヶ月以上かか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ため、今後、国会にて批准され租税条約が発効されたときには、改めてご案内いたします。

－ 記 －

- 企画財政部は、2013年9月11日から13日までの間、香港にて韓－香港租税条約(二重課税防止協定)第3次交渉会談を開催し、条約全ての文案に合意し仮署名を行なった。
- 韓国政府では、香港が韓国の主要海外投資国(順位:第4位、2012年基準)にもかかわらず、香港の国内法上の制約で国際基準に見合った租税情報の交換を行なうことができず、租税条約の締結が困難であった。

しかし、2010年1月に香港が租税条約締結の障害となっていた情報交換に関する香港の国内法が改正されたことに伴い、2010年11月から租税条約の協議を開始した。

特に今回の協議では、過去の租税情報や租税条約で規定していない租税(例:不動産取引関連の税金)など、幅広く租税情報を共有することを認め協議の妥結に大きな進展があった。

- この間、韓国政府では、OECDのモデル条約を中心として課税当局間の情報交換を通じた租税回避の防止と韓－香港における投資交流の増進のために協議を行ってきた。その主要な合意内容は次のとおりである。

① 情報交換

国際基準に基づき、香港側より韓国の脱税容疑者に対する課税資料の確保が可能に



税務
法人

三友 SNTA

なることで香港を迂回した租税回避を防止することができる。

特に租税回避の防止について必要な情報のうち、金融機関が保有している情報も交換が可能になるため、今後、脱税容疑者の課税に関して香港側で保有している過去の租税情報の要請も可能になる。

② 投資所得に対する源泉地国の制限税率の適用

主要投資所得の配当と利子に対して租税条約を既に締結しているシンガポールと同様の水準で韓国内の課税権を最大限確保する。それと共に、今後、韓国内における香港側の投資所得に対して制限税率を適用することによって香港からのインバウンドの投資が拡大すること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 配当:10%(持分率が25%未満を保有しているときには15%)、利子:10%、使用料:10%

- 同租税条約は、今後、両国の正式な署名と国会での批准を経て発効される予定である。

(出典:企画財政部税制室国際租税協力課)

- 以 上 -



税務
法人

三友 SNTA

■ (Yeouido-dong, Shinsong Bldg.)
No.902, 67 Yeouinaru-ro, Yeongdeungpo-gu,
Seoul, 150-923, Korea

■ TEL : +82-2-3215-1300
■ FAX : +82-2-761-6640

한국과 홍콩과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가서명) 안내

문서번호: SNTA201310-01

수 신: 회원사 각위

발 신: 세무법인 삼우SNTA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표제의 건과 관련해서 2013년 9월 16일부로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내 정식서명절차와 국회 비준에는 최소 6개월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향후 국회 비준되어 조세조약이 발효 되는 경우에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획재정부는 2013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홍콩에서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개최하여,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그간 정부는 홍콩이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4위, 2012년 기준)임에도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조세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조세조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홍콩이 조세조약 체결에 장애가 되어온 정보교환 관련 홍콩의 국내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과거 조세정보 및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예: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 폭넓은 조세정보 공유를 허용하여 협상 타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

■ 그동안 한국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및 한-홍콩 투자교류 증진을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보교환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 방지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②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적용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이 기체결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내 홍콩측 투자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으로부터의 Inbound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배당 10% (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이자 10%, 사용료 10%

■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